

# 전문·특수도서관의 제문제

—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

정 덕 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기술정보실장〉

## I. 서 언

1963년이후 네차례에 걸쳐 제안, 시도되었던 도서관법개정이 금번에서야 결실을 보게되었음을 우리 도서관인들의 숙원이 해결되었다는 뿌듯한 충일감과 함께, 지금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동료들의 헌신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현대사회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통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 분석기능,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 개발, 평생학습의 장으로써의 교육적기능등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청하고 있음에 맞추어 이루어진 금번의 도서관법 개정은 도서관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 하였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시점에서 도서관은 기능과 역할, 체제, 운영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전문도서관이 이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전체로써 조화된 도서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나 조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구성요소가 너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전문도서관이 한개의 구심점을 향해 공통의 의사를 집약하고 통일된 제안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때 우리가 경주해야 할것은 비록 서로 다른 목적, 성격과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목표가 세워졌을 때에는 일치하여 서로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고자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제 전문도서관분야의 우리들은 개정된 도서관법

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게되고 어떠한 구속력을 갖게되는지,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서 제안되어야할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서 어떤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현황

한국도서관협회발간 한국도서관통계(1986)에 의한

### 1. 전국의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집계는

종 별	관 수	백 분 률
전문 및 특수도서관	248	4.5%
공공도서관	169	3.1%
대학도서관	262	4.8%
학교도서관	4,758	87.5%
합 계	5,437	100 %

### 2. 전문 및 특수도서관의 소속별 분포는

소 속 별	관수	소 속 별	관수
정 부 부 처	31	연 구 기 관	42
군 기 관	18	기 업 체	45
의 료 기 관	10	학 , 협 회	17
금 용 기 관	20	정 부 투 자 기 관	8
언 론 , 방 송 기 관	9	지 방 자 치 단 체	8
연수원, 훈련원, 교육원	28	기 타	8
종 교 단 체	3		

3. 전문 및 특수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는

지 역	관 수	지 역	관 수	지 역	관 수
서울	145	강원	5	전북	2
부산	6	충북	1	전남	4
대구	4	충남	17	제주	2
인천	4	경북	7		
경기	34	경남	16		

III. 개정도서관법 관련조항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6.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이나 신체장애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학도서관등의 이용제공) ①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시설·자료)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발전위원회)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납본의 절차·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6 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제 38 조** (설립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정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별 자료 확보 및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중에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39 조** (지도·감독) ① 시·군교육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교부장관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0 조** (준용)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 7 장 도서관정보협력망

**제 41 조**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① 정부는 정보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화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3.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제 42 조** (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망의 각급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3. 협력망 운영의 통할

**제 43 조** (지역대표관) ① 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공공도서관중에서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지역협력망의 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제 44 조** (지원·협력) 협력망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 45조(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별 칙

제 47조(과태료) ③ 제 17조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 칙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특수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으로 본다.

### IV. 도서관법 시행령개정과 전문도서관의 법률상 위치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의 각각 이질적인 성격은 적용법률이 또한 다양함에 있다. 정부기관에 속한 도서관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서관법은 조례, 금융기관은 설립법, 은행법, 기업체의 경우 상법, 사류, 연구기관은 설립법, 육성법, 법인체의 경우 설립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법상의 규제를 받게된다. 도서관법이 여타 법률을 구속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법률이 아니므로해서 적용법률이 서로 다른 각종의 전문도서관 혹은 특수도서관을 규제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혹은 각도서관에서 발전적인 정책에 준용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성문화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발간, 한국도서관기준(1981)에 제시된 각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기타 첨가사항을 우리들의 공통문제로 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 있어서 규제 및 조정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될것이며

권유내지는 유도의 보호적 성격이어야 하겠다.

### V.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에 있어 전문도서관 혹은 특수도서관의 제안

#### 1. 전문도서관 혹은 특수도서관의 원칙

1.1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범주가 명시되어야 함.

1.2 도서관의 설립목적은 명확히 성문화해야 한다.

1.3 도서관의 제 규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변화 및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수정한다.

#### 2. 조직 및 직원

##### 2.1 조 직

2.1.1 도서관은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장의 직속하에 둔다.

2.1.2 도서관사서는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직제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연구직 혹은 기술직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2.1.3 도서관은 도서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1.4 도서관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동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것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한다.

##### 2.2 도서관의 직원

###### 2.2.1 직원의 규모

2.2.1.1 도서관직원은 전문사서와 비전문직원으로 구성하되, 주제전문가와, 문헌검색담당자, 색인 및 초록담당자, 번역담당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도 도서관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2.2.2 직원의 자격과 기능

2.2.2.1 도서관경영자는 행정 및 전문적기능에 대해 책임을 진자

2.2.2.2 도서관경영자는 교육, 주제배경, 경험, 개인적인 자격을 겸비한 전문직사서이어야 하

도서관 직원의 직급 구분과 자격 기준

직급 수준	직 위 명	최 소 자 격 기 준
상급직 (관장, 부장, 실장)	수석(또는 책임)연구원(또는 기술원)	1) 박사학위 혹은 기술사자격 취득 후 전문경력 2년이상 2) 도서관학 또는 정보학석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6년이상 3) 도서관학 또는 정보학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10년이상
중급직 (차장, 과장)	선임(또는 주임)연구원(또는 기술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2) 도서관학 또는 정보학석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3년이상 3) 도서관학 또는 정보학석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6년이상 4) 석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6년이상 5)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경력 9년이상
초직급 (직원)	연구원(또는 기술원) 관리원	1) 학사학위 취득 2) 준사서자격을 소지한 후 전문경력 2년이상
보조직	연구원보(또는 기술원보) 기능원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며,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며, 넓은 시야와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종합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2.2.3 도서관경영자는 중견 전문직사서에 행정, 감독, 의무 및 전문적 책임등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2.2.4 전문직사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교육에 힘써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들의 재교육, 연수 및 훈련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2.2.2.5 전문직사서는 그들의 전문성과 관계가 있는 학, 협회에 가입하여 전문적 지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3. 도서관의 봉사활동

3.1 다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체도를 수립하고, 상호기관의 자료이용을 위한 2차자료를 만들어 비치한다.

3.2 대출이 제한되는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대출되어야 한다. 대출 정책을 자료의 최대이용을 위해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독립적인 문헌통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3.3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의 특수도서관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료입수 및 봉사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3.4 도서관법 제17조 ①항, ②항에 의한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의무를 준수한다. 단,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당해기관의 필요절차를 이행하여 원할을 기한다.

3.5 도서관법 제18조 ①항을 준수한다.

3.6 도서관법 제7장을 준수하여 도서관정보 협력망에 적극 참여한다.

4. 도서관의 자료

4.1 불필요하게된 자료를 연1회에 한하여 총 자료의 0.3% 이내에서 폐기 혹은 제적하여 항상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5. 도서관의 시설

5.1 도서관은 최초 설계시부터 도서관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험이 많은 전문사서

도서관의 자료 기준

기관 또는 법인규모	최 소 자 료 기 준			최 소 연 간 증 가 량			비 고
	단행본	정간물	기 타 자 료	단행본	정간물	기 타 자 료	
기관 또는 법인의 연구조사 기술 직 총원이 50명이하일 때	책 10,000	종 500	건 5,000	10%	10%	10%	각종자료의 수는 기증교환자료를 포함.
" 51~300일 때	책 20,000	종 1,000	건 10,000	10%	10%	10%	"
" 301명 이상일 때	책 30,000	종 1,500	건 15,000	10%	10%	10%	"

가 도서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6. 도서관의 예산

6.1 도서관의 예산은 도서관의 모체기관의 목적에 입각한 도서관경영자의 발전계획을 근거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6.2 도서관경영자는 예산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6.3 도서관예산의 구성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외에 비품구입비, 편집출판비, 복사비, 소모품비, 직원훈련비, 회원가입비, 국내·외출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6.4 도서관의 예산은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연구, 조사, 개발관계 총경비중 독립 예산이어야 하고,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전체 연구, 조사, 개발예산의 7%이상을 유지한다.

도서관 예산의 구성 비율

예 산 구 분	구 성 비 율
인 건 비	50%
자 료 구 입 비	30%
기 타 경 비	20%
계	100%

VI. 결 어

도서관의 발전이란 설립자의 확고한 신념과 배려, 사서의 바람직한 봉사, 이용자의 적극적인 요구, 이 세가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질때 가속하게 된다.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각종별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각 부처간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조정, 통계하기 위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고 단일부처인 문교부 소속하에 설치하게된 도서관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며,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이 수행되게 되었다.

비교적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도서관 혹은 특수도서관이 이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때 전체도서관의 발전은 그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 기능을 갖고있는 전문도서관 혹은 특수도서관이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합일점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바라던 도서관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도서관법 시행령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전체도서관의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공동의 참여가 요구된다.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기능과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에 거는 우리도서관의 기대는 자못 크다.